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9.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제안경위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9.17.)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'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'으로 정하고,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89조 등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“제5항제3호”를 “제6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5항제2호”를 “제6항제2호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계한다”를 “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”을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
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0조제4항제9호 중 “제89조제5항”을 “제8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32조제1항제4호 중 “제89조제5항”을 “제8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후단 또는 제86조제1항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생략) <신 설>	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② ~ ⑤ (생 략)	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.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⑦ ----------제6항제3호----------. 제6항제2호----------.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----------

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.	----------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	2. ----------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---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	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130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130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④ -----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·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	9. 제89조제6항----------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제1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132조(과태료) ①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	4. 제89조제6항----------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